

歳入歳出修正予算(案)

○ 총괄표 歲入歲出修正豫算(案) (단위: 천원)

과 항	목 세 항	구청계출 예산액	수 정		수정예산액
			증 액	감 액	
합	계	17,621,073	247,876	1,442,901	16,426,048
사	의 과	7,025,823	800	1,437,201	5,588,422
일반사업 부지		4,654,978	800	867,845	3,787,933
	노 정 관 비	418,749		136,606	282,143
생활보호	장 애 자 복 지	2,384,679	800	731,239	1,654,240
	영 세 민 보 호	2,366,846		568,356	1,797,490
가 정	복 지 과	2,343,246		568,356	1,773,890
가 정 복 지		2,988,936	188,368	5,400	3,151,964
아 동 복 지		2,988,936	188,368	5,400	3,151,964
	노 인 복 지	1,568,307	36,520		1,605,827
	부 녀 복 지	833,009	120,648		953,657
		566,680	31,200	5,400	592,480

(단위: 천원)

과 항	목 세 항	구청계출 예산액	수 정		수정예산액
			증 액	감 액	
청	소 과	5,610,437	24,700	300	5,634,837
관공간비		5,610,437	24,700	300	5,634,837
	청 소 관 비	5,610,437	24,700	300	5,634,837
보	건 소	1,800,532	34,008		1,834,540
	보 건 간 비	1,800,532	34,008		1,834,540
	보 건 기 관 운 영	1,800,532	34,008		1,834,540

(사의과) 세출수정예산(안) 사항별설명서 (단위:천원)

항	과목		구경제출 예산액	수정		수정예산액	사 업 개 요 및 경 비 내 역
	세 항	세 세 항		증 액	감 액		
3110 인건비외복지			4,654,978	800	857,845	3,787,933	
3112 노정관			- 418,749		136,606	282,143	
		3112 - 4 경상사업비	418,749		136,606	282,143	
							◦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 (320명 → 130명) (수정) 93,184,000 (국비) (당초) 229,790,000 (국비) = Δ 136,606,000 (국비)
3113 광에자복지			2,384,679	800	731,239	1,654,240	
		3113 - 3 기본경상비	2,073,829	800	609,267	1,465,362	
							◦ 장애인 외포비 지원 (252명 → 166명) (수정) 3,643,000 [국비 2,914,000 (당초) 3,643,000 [국비 729,000

세출수정예산(안) 사항별 설명서 (단위:천원)

항	과		구정제출 예산액	수정		수정예산액	사업개요 및 경비내역
	세항	세세항		증액	감액		
(당초)							3,987,000 [국비 3,190,000 구비 797,000] = Δ 340,000
							Δ [국비 276,000 구비 64,000]
◦ 장애인 보장구 고부 (20명 → 24명)							
(수정)							4,800,000 [국비 3,840,000 구비 960,000] = 800,000
(당초)							4,000,000 [국비 3,200,000 구비 800,000] = 640,000
							[국비 160,000 구비 160,000]
◦ 시설수용자 보호비 (1,400명 → 1,472명)							
(수정)							776,758,000 [국비 621,406,000 시비 155,352,000] = 127,804,000
(당초)							904,362,000 [국비 723,490,000 시비 180,872,000] = 102,084,000
							Δ [국비 25,520,000 시비 101,131,000]
◦ 정신질환자 시설 운영비 (2개소, 375명)							
(수정)							169,351,000 [국비 135,361,000 시비 33,990,000] = 101,131,000
(당초)							270,482,000 [국비 216,383,000 시비 54,099,000] = 81,022,000
							Δ [국비 20,109,000 시비 20,109,000]

세출수정예산(안) 사항별 설명서 (단위: 천원)

항	과목		구정제출 예산액	수정		수정예산액	사업개요 및 경비내역
	세항	세세항		증액	감액		
							○ 재가복지 봉사원가 운영비 (5계소 → 4계소) (수정) 132,972,000 [국비 93,080,000 / 시비 39,892,000] = △ 27,428,000 (당초) 160,400,000 [국비 112,280,000 / 시비 48,120,000] △ [국비 19,200,000 / 시비 8,228,000]
		3113 - 5 주요사업비	42,300		16,000	26,300	○ 지역복지 봉사원가 장비구입 (2계소 → 1계소) (수정) 12,000,000 [국비 8,400,000 / 시비 3,600,000] = △ 16,000,000 (당초) 28,000,000 [국비 19,600,000 / 시비 8,400,000] △ [국비 11,200,000 / 시비 4,800,000]
3120 생활보호			2,355,846		588,356	1,797,490	
		3121 연세민보호	2,343,246		588,356	1,773,890	

세출수정예산(안) 사항별 설명서 (단위: 천원)

항	과	세항	목	구칭제출 예산액	수정		수정예산액	사업개요 및 경비내역
					증액	감액		
			3121-3 기본경상비	955,743		322,231	673,512	ㅇ거폐보오비 (1,285명 → 1,250명) [국비 538,808,000 시비 67,351,000 구비 67,352,000 (수정) 673,512,000 = Δ 322,231,000 (당초) 955,743,000 [국비 756,594,000 시비 99,575,000 구비 99,574,000 Δ 257,765,000 Δ 32,224,000 구비 32,222,000
			3121-4 경상사업비	1,227,503		247,125	980,378	ㅇ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(3,430명 → 2,500명) [국비 765,455,000 시비 95,683,000 구비 95,683,000 (수정) 956,831,000 = Δ 227,047,000 (당초) 1,183,876,000 [국비 947,102,000 시비 118,388,000 구비 118,388,000 Δ 181,637,000 Δ 22,705,000 구비 22,705,000

세출수정예산(안) 사항별 설명서 (단위:천원)

항	과		구체출 예산액	수정		수정예산액	사 업 개 요 및 경 비 내 역
	세	항		증	감		
							◦ 영세민 전세 용자금 이자 부담 (수정) 241,870,000 X 2.5% = 6,046,750 (당초) 1,045,000,000 X 2.5% = 26,125,000 = Δ 20,078,250

(가정복지과) **세출수정예산(안) 사항별 설명서** (단위:천원)

항	과		구칭제출 예산액	수정		수정예산액	사항개요 및 경비내역
	세항	세세항		증액	감액		
3130 가정복지			2,998,936	188,368	5,400	3,151,964	
	3132 아동복지		1,568,307	36,520		1,605,827	○ 소년소녀가장 아동 수련회 장학 보상 (72명) - 계 원 별 : 시비 1,080,000 , 구비 1,080,000
		3132 - 4 경상사업비	13,450	36,520		49,970	○ 영세 부자기업 지원 (38가정) - 계 원 별 : 시비 6,480,000 , 구비 6,480,000
							○ 시립아동 용돈 지급 (42명) - 계 원 별 : 시비 950,000 , 구비 950,000
	3133 노인복지		833,009	120,688		953,697	○ 시립의 노인방문사업 (2개소) - 계 원 별 : 시비 9,750,000 , 구비 9,750,000

세 출 수 정 예 산 (안) 사 항 별 설 명 서 (단위: 천원)

항	과 목		구칭제출 예산액	수 정		수정예산액	사 업 개 요 및 경 비 내 역
	세 항	세 세 항		증 액	감 액		
		3133-4 경상사업비	403,889	30,648		434,537	○ 시영외 식당 운영비 (계소) (수정) 41,280,000 [시비 5,640,000 / 구비 35,640,000] = 22,848,000 (당초) 18,432,000 [시비 9,216,000 / 구비 9,216,000] [시비 △ 3,576,000 / 구비 26,424,000] ※ 예산외 : 30,000,000
		3133-5 주요사업비	271,904	90,000		361,904	○ 노인복지회관내 시영외 식당 운영 (계소) - 주부식비 (60명, 300일) 7,800,000 - 인건비 (회사부 1명, 영양회 조리사 1명) 12,800,000 ※ 예산외 : 12,000,000
	3134 부너복지		566,680	31,200	5,400	592,480	○ 경노동주방사업 (계소) 90,000,000

세출수정예산(안) 사항별설명서 (단위:천원)

항	과목		구칭제출 예산액	수정		수정예산액	사업개요 및 경비내역
	세항	세세항		증액	감액		
		3134-3 기본경상비	312,514		5,400	307,114	○ 모차입시 보조시설 운영비 (1개소) (수정) 7,800,000 (시비) (당초) 13,200,000 (시비) = △ 5,400,000 (시비)
		3134-4 경상사업비	99,616	31,200		124,816	○ 영세 모차기어업 기술교육 지원 (20명 → 19명) (수정) 24,000,000 [시비 12,000,000 구비 12,000,000] (당초) 4,800,000 (시비) = 19,200,000 [시비 7,200,000 구비 12,000,000]
							○ 시범 주부 문화공간 운영 (4개소) - 계 원 법 : 시비 4,000,000, 구비 4,000,000 ○ 주부대학 운영비 지원 (1개소) - 계 원 법 : 시비 2,000,000, 구비 2,000,000

세출수정예산(안) 사항별 설명서 (단위:천원)

항	과	세항	목적	구정예산액	수정		수정예산액	사업개요 및 경비내역
					증액	감액		
3310 환경관				5,610,437	24,700	300	5,634,837	
	3313 청소관			5,610,437	24,700	300	5,634,837	○ 쓰레기 재활용 보관함 제작 (2,400조 → 3,000조) [시비 30,000,000 (수정) 60,000,000] [구비 30,000,000] = 0 (당초) 60,000,000 [시비 30,000,000 [구비 30,000,000]
			3313 - 5 주요사업비	4,435,680	24,700	300	4,430,080	○ 소형 컨입속기 보급 (30계 → 62계) [시비 10,700,000 (수정) 21,400,000 [구비 10,700,000] = 10,900,000 (당초) 10,500,000 [시비 5,250,000 [구비 5,250,000] = [시비 5,450,000 [구비 5,450,000]
								○ 재활용품 수집용 비어카 보급 (30계 → 35계)

세출수정예산(안) 사항별 설명서 (단위: 천원)

항	과		구칭제출 예산액	수정		수정예산액	사 업 개 요 및 경 비 내 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세	항		증	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(수정)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3,300,000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[시비 구비]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1,650,000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7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=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△ 300,000</td> </tr> <tr> <td>(당초)</td> <td>3,600,000</td> <td>[시비 구비]</td> <td>1,800,00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7"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△ [시비 구비] 150,000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7"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50,000</td> </tr> </table>	(수정)	3,300,000	[시비 구비]	1,650,000					=							△ 300,000	(당초)	3,600,000	[시비 구비]	1,800,000												△ [시비 구비] 150,000								150,000
(수정)	3,300,000	[시비 구비]	1,65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=							△ 3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당초)	3,600,000	[시비 구비]	1,8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	△ [시비 구비] 15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	15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고품 정보 교환엔바 운영 _____ 13,800,000 - 용보지 발행 용지 (60,000부, 6지) 10,800,000 - 운영비 (수수료 및 수수료, 월 250,000원) 3,000,000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(보건소) **세출수정예산(안) 사항별설명서** (단위:천원)

항	과목		구칭제출 예산액	수정		수정예산액	사업개요 및 경비내역
	세항	세세항		증액	감액		
3210 보건관리			1,800,532	34,008		1,834,540	
	3213 보건기관운영		1,800,532	34,008		1,834,540	
		3213-5 주요사업비	508,029	34,008		543,037	○ 일본 뇌염 접종 (70,000명 → 100,000명) (수정) 50,000,000 [식비 4,117,000 구비 45,883,000 = (당초) 34,982,000 [식비 4,117,000 구비 30,875,000 ○ 보건장비 구입 (자동차주사기 1대) ○ 보건장비 구입 (유분용 배기분주기 1대) ○ 보건장비 구입 (평판용 배기분주기 1대)